

의안번호	제3087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 사항	
----------	--

##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6. 4. 17.

#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김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87
----------	------

발의연월일: 2026. 4. 17.

발 의 자: 김향숙, 김석한,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의원(5인)

## 1. 제안이유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마을 공동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마. 보조금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9호

- 예고기간: 2026. 4. 17.(금) ~ 4. 23.(목)[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 4. 본 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의 공동창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나.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건축물

다.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축물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 개보수, 안전조치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계획
3. 정비 후 활용 방안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훼손 또는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 또는 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안전 위험성의 정도
2. 주민 이용 가능성 및 공공성
3.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2. 건축물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
3.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4. 마을 공동시설 또는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

②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공익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점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약**

\*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 지원

가. 관련 조문

- 안 제7조(지원대상) 제1항

주민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발생 요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주민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노후 새마을창고

2) 사업규모

[2026년] 30,000천 원\* 1개소 = 30,000천 원

[2027년] 35,000천 원\* 1개소 = 35,000천 원

[2028년~] 40,000천 원\* 1개소 = 40,000천 원

※ 매년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 상승분 반영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세출	군비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재원 조달	의존재원	-	-	-	-	-	-
	자체재원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200,000
	기 타	-	-	-	-	-	-
	소 계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200,000

**작성자: 건축개발과장 강 도 영**

## 관 계 법 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시행 2026. 2. 26.][경상남도조례 제6003호, 2026. 2. 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그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

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내용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소유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